

8.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

法律 第5,140號 1995.12.30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본문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중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및 “건설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되어”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41조 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4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요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41조).

나.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41조의2).

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44조).

〈법제처 제공〉

‘설마’하면 부실시공 ‘혹시’하면 성실시공